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442
----------	-------

제출연월일 : 2026. 3. 12.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및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과 같이 기관·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상 추정 사유를 확대하며, 피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등(안 제58조의3 신설)

1)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익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또는 쟁송절차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가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이행의무 보완(안 제62조의 3제4항 후단 및 제64조제4항 후단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보다 높임.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사유 추가(안 제63조)

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

장 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또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까지 추정 사유로 추가하여 그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함.

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감면 강화(안 제66조제5항·제7항 신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피신고자는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신고자(피신고자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신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신고자가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감사·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2항 단서 중 “신고자가”를 “제1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한 자”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

제62조의3제1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3제6항 중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 및 기각결정의 절차,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행여부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 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나.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자가 해당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4. 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후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訴)를 제기하는 경우

제63조의2제1항 전단 중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신분보장등조치권고 결정”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의2제1항 전단 중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을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 중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제6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관하여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그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로 본다.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민사재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가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피신고자는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의2”를 “제58조의2, 제58조의3”으로,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제6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8조의2는”을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소·고발”을 “신고·고소·고발”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만 해당한다.

제6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 이 경우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8조 중 “위반한”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제4항 및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변보호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8조의3(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신고자(피신고자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 하였던 신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u></p> <p><u>1. 내부신고자가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u></p> <p><u>2.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감사·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u></p>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생략)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

3.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해당하는 -----

④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 (생략)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

-----.

3. 4. (현행과 같음)

② -----

----- 권고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할-----.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 -----

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
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
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
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
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
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
및 기각결정의 절차, 조치결과
의 통보 및 이행여부의 점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
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직권 또는 신분보장신청
인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
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나.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생략)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자가 해당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4. 신고자가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후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

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
회복 등에 관한 소(訴)를 제기
하는 경우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
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
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
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
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

--- 신분보장등조치권고결정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단 신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64조의3(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

제65조(협조자 보호) -----

제64조의2, 제64조의3-----

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생략)
<신설>

----- 이 경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관하여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그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로 본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가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피신고자는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등을 금지하거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3. (생략)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후단 신설>

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⑧ -----
-----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민사재판-----

-----.

제67조(준용규정) -----
제58조의2, 제58조의3-----

----- 제64조의2, 제64조의3-----
-----.
---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은

-----.

1. ~ 3. (현행과 같음)
4. -----

----- 신고·고소·고발-----
-----.

<신 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 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생략)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 이 경우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 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

-----.